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3626호)

2025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순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 부
2. 제안연월일 : 2025. 10. 17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0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‘조건부 압류금지 재산’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‘압류금지 재산’으로 변경하고,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·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,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0조 및 제41조).

Ⅲ. 검토의견

1.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

개정안은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방지 또는 보안관련 물건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40조).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압류금지 재산)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.	제40조(압류금지 재산) ----- -----.
1.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, 침구, 가구와 주방기구	1.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동거가족”이라 한다)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, 침구, 가구,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
2.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	2.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·서류	6. 족보·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
7.·8. (생 략)	7.·8. (현행과 같음)
9.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	9.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1.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

현행	개정안
12. 의료·조산(助産)의 업(業)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·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<신설> <신설> 11. (생략)	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, 가축, 사료, 종자,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.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, 기구, 미끼,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. 전문직 종사자·기술자·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,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.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안경, 보청기, 틀니, 의수족, 지팡이,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.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, 경보 기구,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14. (생 략) 제41조(조건부 압류금지 재산) 다음 <u>각 호의 재산은 채납자가 채납액 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 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.</u> 1. <u>농업에 필요한 기계·기구, 가 축류의 사료, 종자와 비료</u> 2. <u>어업에 필요한 어망(漁網)·어 구(漁具)와 어선</u> 3. <u>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·기구와 비품</u>	17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 <u>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</u> 18. (현행 제14호와 같음) <u><삭 제></u>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압류 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.	

현행 「지방세징수법」은 압류금지 재산을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, 통합하여 압류재산을 금지하고 있는 「국세징수법」 및 「민사집행법」과 구분 체계가 달라 채납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「지방세징수법」 제40조(압류재산 금지)와 제41(조건부 압류재산 금지) 조문을 하나의 조문 안제40조(압류재산 금지)로 통합하고, ‘신체보조기구’ 및 ‘재해방지 또는 보안관련 물건’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며, 현행법상의 조문들을 보완하여 「국세징수법」 및 「민사집행법」상의 압류금지 재산 규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,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333